

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항공우주정책대학원(이하 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① 대학원 학사업무의 처리는 이 시행세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대학원 학칙과 이 시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

제3조(지원 및 입학절차)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지원 및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학지원서류 제출
2. 관련전형 실시
3. 대학원위원회 사정
4. 합격자 발표
5. 입학등록

제4조(입학전형 방법)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.
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'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'에 의해 실시한다.

제5조(지원자격)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(예정자 포함)로 한다.

제6조(서류전형, 구술시험) ① 서류전형은 대학성적, 학업 및 연구계획서,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평가하며, 각 전공에서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②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에 대하여 평가하며, 각 전공에서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③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, 항목별 배점은 각 전공에서 정한다.
④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의 성적은 심사위원의 평가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다.

제7조(지원 구비서류)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2. 대학졸업(예정)증명서 1부
3.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
4. 사진 1매

-
5. 학업 및 연구계획서(소정양식) 1부
 6.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부
 7. 재직증명서(해당자) 1부
 8. 국·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관할청 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 취학허가서 1부
 9. 학력조회확인서 1부 (외국대학 학위이수자 해당)

제8조(전형위원) ① 총괄전형위원장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으로 한다.

- ② 전형위원장은 각 전공 주임교수로 하며 전형위원은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하고,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전형위원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의 성적을 평가한다.

제8조(성적사정)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전형 결과를 사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.

제10조(편입학전형) ① 편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동일계열이어야 한다.

- ② 편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
 1.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.
 2. 지원자는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3. 편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선발한다.

제11조(신입생 등록) 입학전형에서 최종 합격판정을 받은 신입생 및 편입생은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.

제 3 장 등록 및 수료

제12조(등록)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.

- ① 정규등록은 본 시행세칙 제16조 수료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.
- ②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연구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학기(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학기 및 논문제출 학기)에 연구지도를 받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.

제13조(연구등록금) ① 연구등록자의 등록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- ②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1학점 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4조(등록금 대체 및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.

1. 수업일수의 4주 이전에 일반휴학하는 경우
2. 군입대 또는 질병(4주 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)으로 휴학하는 경우
- ②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할 경우 세부절차 등은 「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15조(수료의 요건) 석사학위과정에서 5학기(계절수업 포함)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, 이 세칙

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) ① 수료자는 정하여진 소정의 자격시험(종합시험)에 합격한 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심사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심사를 받는 학기에 심사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전공 및 지도교수

제17조(전공)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세부전공은 <별표 1>과 같다.

제18조(연구계획서) ① 연구계획서 제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2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공, 지도교수 및 연구과제가 결정된다.

③ 주임교수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학생이 전공할 분야의 전공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하되, 필요시 1명의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④ 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 3개 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한다.

제19조(지도교수의 의무)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계획 수립, 수강지도, 제반 연구발표 및 학위논문 작성 등 학생의 학업 전반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며, 매 학기말 연구지도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보고서를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지도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0조(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변경) ① 지도교수 또는 세부전공의 변경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또는 세부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해외파견,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기 초 30일 기간 외에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세부전공이 변경된 경우,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. 단,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예비발표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1조(전공 변경) ① 전공변경은 석사과정 2차 또는 3차 학기 시작 전에 계열구분 없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이수학점

제22조(교과학점)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24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소속 전공 과목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제23조(학점인정) ① 입학 전 국내외 타대학원(여기서 타 대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과 본 대학교 외의 각 대학원을 포함한다)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한 학위과정의 동일분야로 입학할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재학기간 중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본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③ 전항의 학점인정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제1항의 학점인정은 입학 후 1차 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제2항의 학점인정은 해당 사항 발생 후 1개 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4조(학·군제휴) ① 군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 및 군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한다.

② 학·군제휴 협약에 의한 군 위탁생에게 학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군 위탁생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·군제휴 협약서에 따르며,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제25조(연구지도학점) ① 연구지도학점은 지도교수 배정을 받은 때부터 지도교수에 의하여 매 학기 2학점씩 부여된다.

② 학생은 매 학기말에 연구내용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연구내용을 평가하여 매 학기말에 연구지도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 보고서를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.

③ 연구지도학점은 합격(P) 또는 불합격(NP)으로 하며 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④ 연구지도학점은 6학점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단, 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⑤ 연구지도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26조(선수과목) ① 석사학위과정 입학자에 대하여는 전공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대학에 설강된 특정과목(이하 선수과목이라 한다)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.

② 선수과목은 입학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에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.

③ 학생에게 과하는 선수과목은 1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④ 선수과목의 이수는 대학원 설강과목 이수에 선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선수과목 전부를 이수하기 전에는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다.

⑤ 선수과목 이수는 C 이상으로 한다.

⑥ 선수과목은 합격(P) 또는 불합격(NP)으로 성적을 부여하며,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및 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27조(이수학점 미달) ① 재학 중인 자가 수업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1학점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/6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정규등록 학기(5개학기)를 초과한 자가 교과학점 30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고자 할 경우 1 학점 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6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6 장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

제28조(교과목의 구분) 교과목은 전공 단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제29조(교과목 편성) 매 2년마다 전공 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제30조(학점수) 모든 과목은 한 과목당 1학기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공우주 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.

제31조(교과과정 변경) 설정한 교과과정은 2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2년 미만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2조(교과목이 전공과정별로 분리된 학과의 교과목 편성) 교과목이 세부전공과정별로 분리된 전공은 공통교과목과 세부전공과정별 교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.

제33조(교과목 개설) 전공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그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학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, 매 학기 개강 1개월 전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.

제34조(학점취득 제한) 수업일수(학기 당 15주 이상)의 3분의 1이상 결석하는 자는 해당과목학점 을 취득할 수 없다. 단,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35조(수강생의 수)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과목은 자동적으로 폐강된다. 단, 각 전공의 정규등록 학생수가 15명 미만인 경우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설강할 수 있다.

제36조(강의 담당자의 자격)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대학교 전임교원
2.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외 인사
3.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

제37조(강의 담당 과목수) 대학원과정 강의는 한 학기 당 1과목(또는 3학점)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2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공우주정책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장 종합시험

제39조(자격) ①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에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.

② 응시자격은 교과학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성적의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로 한다.

제40조(시행 및 대체) 종합시험은 각 전공 학사운영내규에 의거 실시하며, 구술시험이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41조(종합시험 결과제출) ①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종합시험 답안지를 비롯한 제반 평가자료는 전공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시행 이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2조(시험과목) 종합시험 과목은 각 전공 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.

제43조 (배점 및 합격)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(과목당 60분)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 8 장 학위청구논문

제44조(예비발표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의 올바른 진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이 속한 학기의 직전학기까지 예비발표를 행한다.

② 예비발표는 주임교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소정양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주임교수가 해당 전공분야 교수 중에서 3인 이상을 정하여 위촉한다.

④ 예비발표의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가하다고 판정할 때 예비발표 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45조(제출자격)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5개 학기(계절수업 포함) 이상 정규등록한 자
2. 교과학점을 24학점(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, 계절수업 포함)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3. 연구지도학점을 6학점(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)이상 취득한 자. 단, 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4학점
4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5.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합격한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

제46조(심사용 논문제출) ① 학생은 논문심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심사용 논문은 3부 작성하여,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.

③ 심사용 논문은 지정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7조 (심사위원)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각 전공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 위원장 및 위원을 선정하여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정된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.

③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교원 혹은 권위자 중에서 선정한다.

④ 심사위원 중 위원장(주심) 1인을 둔다.

⑤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
제48조 (논문심사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위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논문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공개발표 심사로 한다.

- ③ 서류심사는 제출된 논문을 검토하여 주제, 도입, 전개, 결과 등 논문의 내용과 논문 체제 및 논문의 성과 등을 심사한다.
- ④ 공개발표 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을 포함한 참관자들 앞에서 공개발표하고 질의 응답으로 논문의 내용, 체제, 성과 등을 심사한다.
- ⑤ 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, 역본 또는 모형, 표본,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논문에 수정,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충분한 시간이 요한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되는 경우는 1개 학기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할 수 있다.

제49조(심사판정) ① 서류심사와 공개발표 심사가 끝난 다음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.

② 논문심사 평가는 A, B, C, D로 하며,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평가가 C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50조(논문 재심사)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의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51조(논문작성) 학위논문의 작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.

제52조(학위 논문제출) ① 학위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, 학위논문(지정부수)와 저작권 이용동의서를 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학위수여를 보류하며,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된다. 단, 1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논문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③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처(중앙도서관 홈페이지)에 원문을 업로드한 후 “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서”를 출력하여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3조(심사료) 학위청구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9 장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운영위원회

제54조(설치 및 구성) ①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정책 대학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, 각 전공 주임교수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55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.

제56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제 10 장 학위수여

제57조(학위수여 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취득 자격을 가진다.

1.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교과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2. 석사학위과정 5학기(계절수업 포함)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
3.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서 합격 판정된 자 또는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
제58조(학위수여 의결)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9조(학위수여 의결보고) 대학원위원회가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한 후에는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0조(학위수여) 학위수여는 본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학위 종별로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.

제61조(학위수여 시기) 정규 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한다.

제62조(학위취소) ① 총장은 석사학위를 받은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② 학위를 받은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 될 수 있다.

제 11 장 계절수업

제63조 (강좌개설) ① 계절수업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.

② 과목당 개설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.

제64조(수강대상 및 이수학점) ① 계절수업은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.

② 계절수업에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 3학점이며 총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65조(수강기간) 계절수업 수강은 정규 4학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제66조(수강료 납부) ① 계절수업 수강을 원하는자는 수강신청을 하고 정한 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료는 정규학기 수업료의 학점당 1/6로 납부한다.

제67조 (강사료 지급) 강사료는 대학 강사료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.

제68조(기타) 기타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학위과정별 전공 및 세부전공표

구 분	과 정	전공	세 부 전 공	학위종별
항공우주 정책 대학원	석사과정	항공우주법 전공 (Aerospace Law)	항공우주법(Aerospace Law)	법학석사
		항공우주정책 전공 (Aerospace Policy)	항공우주정책 (Aerospace Policy)	정책학석사